

APPRAISAL REPORT

# 감정평가서

건명 : 대송환경개발 주식회사  
소유물건(2024타경35698)

의뢰인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사법보좌관  
이수경

평가서번호 : 241127-403031-0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ang Hak Sun Appraisal Office

강학선감정평가사사무소

##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강학선

감정평가액	일십오억이천팔백일십이만육천사백구십원정(₩1,528,126,490.-)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사법보좌관 이수경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경매2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대송환경개발 주식회사 (2024타경35698)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 표 시 근 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11.28	2024.11.28	2024.11.28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별	지	참	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부동산)감정평가표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4,507	토지	4,507	-	982,526,000
	건물	1,803.67	건물	1,803.67	-	470,840,490
	기계기구	2식	기계기구	2식	-	감정평가 외
	제시외건물	(464)	제시외건물	464	-	45,760,000
	제시외관정	(1식)	제시외관정	1식	-	6,000,000
	제시외수목	(1식)	제시외수목	1식	-	3,000,000
	제시외기계기구	(1식)	제시외기계기구	1식	-	20,000,000
	이		하	여	백	
	<b>합계</b>					<b>₩1,528,126,490</b>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I.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소재 “태생3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건물·기계기구]"으로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 (1) 기준가치

본건 감정평가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감정평가 조건

본건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 3. 감정평가 기준 및 방식

#### (1) 감정평가 기준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제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평가하였음.

#### (2) 감정평가의 3방식

##### 1) 원가방식

##### ① 원가방식

“원가방식”이란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방식을 말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② 원가법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적산가액”이란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함.

## ③ 적산법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적산임료”란 적산법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말함.

## 2) 비교방식

### ① 비교방식

“비교방식”이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을 말함.

### ②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함.

### ③ 임대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비준임료”란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말함.

### ④ 공시지가기준법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3) 수익방식

### ① 수익방식

“수익방식”이란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을 말함.

### ②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수익가액”이란 수익환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함.

### ③ 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수익임료”란 수익분석법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말함.

## 4.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1)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본건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주된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 (2) 건물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본건 건물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구조, 규모, 용재, 시공의 정도, 관리 및 이용상태, 경과년수 등 제 현상을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3) 기계기구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본건 기계기구의 감정평가는 규격, 형식, 용량, 재질, 년식, 부대설비 등과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중고시세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 5. 기준시점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4-11-28>임.

##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 (1)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4년 11월 28일임.

### (2) 실지조사 내용

자세한 실지조사 내용은 아래의 “그 밖의 사항” 및 후첨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7. 그 밖의 사항

- 1) 본건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2) 본건은 지적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적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 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 3) 본건 토지 기호(1~3)은 건축물대장상 일단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이용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4)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 ㉠~㉡(후첨 “건물개황도, 사진” 참조)이 소재하여,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시외건물을 개략적으로 실측하여 감정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 5)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관정 ㉢(후첨 “사진” 참조)이 소재하나, 규격(굴착깊이, 굴착지름 등) 및 사용가능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개략적으로 실측하여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정확한 규격 및 사용가능여부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 6)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수목 ㉣(후첨 “사진” 참조)이 소재하여,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조경포함하여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 7) 본건 기계기구1(사출기),2(사출기)는 기준시점 현재 소재불명으로 감정평가 외 하였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 8)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기계기구(수변전설비) ㉤(후첨 “사진” 참조)이 소재하여,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 9) 본건 토지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후첨 “사진” 참조)가 소재하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 10) 본건 건물은 2024.11.1일경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었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개요

### 1. 평가대상 토지의 개요

기호	소재지	면적(㎡)	지 목	용도지역	2024년 개별지가 (원/㎡)	비고
1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23-14	1,891	공장용지	계획관리	106,100	기호(1~3) 일단지
2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23-22	1,308	공장용지	계획관리	106,100	
3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23-23	1,308	공장용지	계획관리	106,100	

※ 본건 토지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후첨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바람.

### 2. 평가대상 건물의 개요

기호	층 수 (지하/지상)	구조	용도	연면적 (㎡)	사용승인일	비고
4	지하1/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스라브지붕	공장	1,590.88	1988.06.21외	-
4-1	-/1층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창고	65.07	2008.01.24	-
4-2	-/1층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물탱크실	22.72	2008.01.24	-
5	-/1층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공장	125	2017.09.12	-

※ 본건 건물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후첨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I.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대상토지 시산가액

#### (1) 개요

본건 토지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 (2) 비교표준지 선정

##### 1)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 2) 비교표준지 선정

[ 공시기준일 : 2024-01-01, 단위 : 원/㎡ ]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조건	형상 지세	공시지가
A	대소면 태생리 23-11	1,846 (일단지)	공장 용지	공업용	계획관리	소로 한면	부정형 평지	116,500

##### 3) 선정 이유

상기의 <비교표준지 A>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며,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소재하여, 평가대상 토지와 제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시점수정

### 1) 적용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기준시점 당시 당해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 2) 지가변동률

시·군·구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산정
충청북도 음성군 계획관리지역 (24.01.01~24.11.28)	2.491	2024.01.01 ~ 2024.10.31 : 2.447 2024.10.01 ~ 2024.10.31 : 0.048 $(1 + 0.02447) * (1 + 0.00048 * 28/31)$ ≒ 1.02491

## (4)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동일 용도지역으로 인근지역(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5) 개별요인 비교

### 1) 개별요인 비교항목

[공업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철도전용인입선, 전용부도 등
환경조건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자연환경	동력자원, 공업용수, 공장배수, 지반, 지질 등
획지조건	면적,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규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등

### 2)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기호	비 교 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1~3	A	0.95	1.00	1.00	1.00	1.00	1.00	0.950
본건이 비교표준지 대비 본건은 가로조건(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등)에서 열세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6) 그 밖의 요인 보정

###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 판례(2004.05.14 선고 2003다38207),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고,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매매사례 및 평가선례 등과의 균형유지, 감정평가액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함.

### 2)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

$$\text{격차율 (기준시점)} = \frac{\text{평가선례(거래사례)가액}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비교표준지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3)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 등의 선정

#### ① 본건 최근 거래사례

[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거래시점	거래금액	비고
태생리 23-22, 23-23	공장용지	계획관리	2022.03.01	502,000,000	토지거래

#### ② 본건 최근 평가선례

[ 출처 : 감정평가정보센터(한국감정평가사협회), 단위 : 원/㎡ ]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기준시점	평가단가	평가목적	비고
태생리 23-14 외	공장용지	계획관리	2022.03.21	181,000	담보	-

#### ③ 인근지역 거래사례

[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단위 : 원/㎡ ]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거래시점	거래단가	비고
ㄱ	태생리 362-8	창고용지	계획관리	2022.01.17	194,600	토지거래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④ 인근지역 평가선례

[ 출처 : 감정평가정보센터(한국감정평가사협회), 단위 : 원/㎡ ]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기준시점	평가단가	평가목적	비고
ㄴ	태생리 23-11	공장 용지	계획관리	2024.04.30	227,000	시가참고	-

## ⑤ 사례 등의 선정

상기의 평가선례 및 거래사례 중에서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실제이용상황 및 주변환경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시점수정이 가능하며, 비교표준지와 물적유사성·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 ㄴ>을 선정함.

## 4) 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가액

### ① 사정보정

상기의 비교사례는 해당사항 없음.

### ② 시점수정

표준지	사례	시·군·구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	지가변동률 산정
A	ㄴ	충청북도 음성군 계획관리지역 (24.04.30~24.11.28)	1.310	2024.04.01 ~ 2024.04.30 : 0.249 2024.05.01 ~ 2024.05.31 : 0.220 2024.06.01 ~ 2024.06.30 : 0.273 2024.07.01 ~ 2024.07.31 : 0.333 2024.08.01 ~ 2024.08.31 : 0.236 2024.09.01 ~ 2024.09.30 : 0.141 2024.10.01 ~ 2024.10.31 : 0.048  $( 1 + 0.00249 * 1/30 ) * ( 1 + 0.00220 ) * ( 1 + 0.00273 ) * ( 1 + 0.00333 ) * ( 1 + 0.00236 ) * ( 1 + 0.00141 ) * ( 1 + 0.00048 ) * ( 1 + 0.00048 * 28/31 )$ ≒ 1.0131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③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평가선례는 동일 용도지역으로 인근지역(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일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④ 개별요인 비교

표준지	사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A	ㄴ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사례 대비 비교표준지는 개별적요인에서 대등함.								

### ⑤ 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가액

표준지	사 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가액(원/㎡)
	기호	가액(원/㎡)					
A	ㄴ	227,000	-	1.01310	1.000	1.000	229,974

### 5)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가액

표준지	비교표준지 가액 (원/㎡)	시점수정	산출가액(원/㎡)
A	116,500	1.02491	119,402

### 6)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표준지	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가액(㉠)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가액(㉡)	격차율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A	229,974	119,402	1.926	1.92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대상토지 시산가액

[ 단위 : 원/㎡ ]

기호	비 교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 인	산출단가	적용단가
1~3	A	116,500	1.02491	1.000	0.950	1.92	217,789	218,000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대상토지 시산가액

###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 (2)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 1) 인근지역 거래사례

[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단위 : 원/㎡ ]

기호	소 재 지	지목	용도지역	거래시점	거래단가	비교
ㄱ	태생리 362-8	창고 용지	계획관리	2022.01.17	194,600	토지거래

#### 2)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상기의 거래사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인근 지역에 소재하고, 사정보정·시점수정이 가능하며, 대상토지와 물적유사성·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 ㄱ>을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함.

### (3) 사정보정

상기의 비교 거래사례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이는바, 사정 보정요인은 없음.(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시점수정

대상 토지	거래 사례	시·군·구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	지가변동률 산정
1~3	ㄱ	충청북도 음성군 계획관리지역 (22.01.17~24.11.28)	6.561	2022.01.01 ~ 2022.01.31 : 0.255 2022.02.01 ~ 2022.02.28 : 0.241 2022.03.01 ~ 2022.03.31 : 0.277 2022.04.01 ~ 2022.04.30 : 0.338 2022.05.01 ~ 2022.05.31 : 0.263 2022.06.01 ~ 2022.06.30 : 0.253 2022.07.01 ~ 2022.07.31 : 0.222 2022.08.01 ~ 2022.08.31 : 0.196 2022.09.01 ~ 2022.09.30 : 0.197 2022.10.01 ~ 2022.10.31 : 0.108 2022.11.01 ~ 2022.11.30 : 0.107 2022.12.01 ~ 2022.12.31 : -0.018 2023.01.01 ~ 2023.12.31 : 1.602 2024.01.01 ~ 2024.10.31 : 2.447 2024.10.01 ~ 2024.10.31 : 0.048  $(1 + 0.00255 * 15/31) * (1 + 0.00241) * (1 + 0.00277) * (1 + 0.00338) * (1 + 0.00263) * (1 + 0.00253) * (1 + 0.00222) * (1 + 0.00196) * (1 + 0.00197) * (1 + 0.00108) * (1 + 0.00107) * (1 - 0.00018) * (1 + 0.01602) * (1 + 0.02447) * (1 + 0.00048 * 28/31)$ $\approx 1.06561$

## (5) 가치형성요인 비교

대상 토지	거래 사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요인						격차율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3	ㄱ	1.000	1.000	1.03	0.95	1.00	1.00	1.00	1.00	0.979
거래사례 대비 본건은 가로조건(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등)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대상토지 시산가액

[ 단위 : 원/㎡ ]

대상 토지	거래 사례	사례가액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	산출단가	적용단가
1~3	ㄱ	194,600	1.000	1.06561	0.979	203,013	203,000

## 3.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 (1) 합리성 검토 및 적용단가의 결정

토지의 주된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결과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의 적용단가로 결정하였음.

[ 단위 : 원/㎡ ]

기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적용단가 결정	비고
1~3	218,000	203,000	218,000	-

### (2)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기호	적용단가 (원/㎡)	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공부면적	사정면적		
1~3	218,000	4,507	4,507	982,526,000	일단지
토지 감정평가액(원)				982,526,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V. 대상 건물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1. 평가개요

본건 건물의 감정평가는 대상 건물의 구조, 규모, 용재, 내구연한, 현상, 관리상태, 유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인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 2. 재조달원가 산정

#### (1) 표준단가

[ 출처 : 2023년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한국부동산연구원) ]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원/㎡)	내용연수
05-01-06-10	일반공장	철골조/철골지붕틀/ 샌드위치패널/4.5m	4	640,000	35 (30~40)
05-04-06-06	일반창고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틀/ 아스팔트싱글/5.5m	4	588,000	35 (30~40)
05-01-06-10	일반공장	철골조/철골지붕틀/ 샌드위치패널/9.0m	4	862,000	35 (30~40)

#### (2) 재조달원가의 결정

##### 1) 재조달원가의 결정

본건 건물의 구조, 설계 및 시공의 질, 본건 건물의 표준적인 신축단가 및 부대설비 단가와 본건 건물의 개별적 특성, 감정평가 목적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단위 : 원/㎡ ]

기호	층	구조	시공의 정도	마감재 수준	관리상태 및 현상	재조달원가 (원/㎡)	비 고
4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	-	-	650,000	공장, 숙소 등
	1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	-	-	750,000	공장, 사무실 등
	2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	-	-	950,000	숙소 등
4-1	1층	철근콘크리트조	-	-	-	500,000	창고
4-2	1층	경량철골조	-	-	-	350,000	물탱크실
5	1층	경량철골구조	-	-	-	450,000	공장

### 3. 감가수정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인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수정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 단위 : 원/㎡ ]

기호	층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잔존년수	내용연수	비 고
4	지하1층, 1층,2층	2024.11.28	1988.06.21	14	50	-
	2층		2008.01.24	14	30	-
4-1	1층		2008.01.24	19	35	-
4-2	1층		2008.01.24	19	35	-
5	1층		2017.09.12	28	35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건물 감정평가액 결정

기호	층	재조달원가 (원/㎡)	잔존 년수	내용 년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사정면적 (㎡)	감정평가액 (원)	비고
4	지하1층	650,000	14	50	182,000	182,000	532.68	96,947,760	-
	1층	750,000	14	50	210,000	210,000	506.58	106,381,800	-
	2층	950,000	14	50	266,000	266,000	247.5	65,835,000	-
	2층	950,000	14	30	443,333	443,000	304.12	134,725,160	-
4-1	1층	500,000	19	35	271,429	271,000	65.07	17,633,970	-
4-2	1층	350,000	19	35	190,000	190,000	22.72	4,316,800	-
5	1층	450,000	28	35	360,000	360,000	125	45,000,000	-
<b>건물 감정평가액(원)</b>								<b>470,840,490</b>	

※ 산정단가 : 재조달원가 × 잔존년수 / 내용년수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 1.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기호	적용단가 (원/㎡)	공부면적 (㎡)	사정면적 (㎡)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1~3	218,000	4,507	4,507	982,526,000	기호(1~3) 일단지
건 물	4,4-1, 4-2,5	-	1,326.8	1,326.8	470,840,490	-
소 계					1,453,366,490	
기계기구	1,2	-	2식	2식	감정평가 외	현황 소재불명
제시외 건물	㉠~㉡	-	(464)	464	45,760,000	-
제시외 관정	㉢	-	(1식)	1식	6,000,000	-
제시외 수목	㉣	-	(1식)	1식	3,000,000	-
제시외 기계기구	㉤	-	(1식)	1식	20,000,000	-
<b>감정평가총액(원)</b>					<b>1,528,126,490</b>	

### 2. 결정의견

상기와 같이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이론 등에 근거하여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기계기구가액의 합계액으로 결정하되, 평가목적·대상물건의 특성·인근지역내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23-14	공장용지	계획관리지역	1,891	4,507	218,000	982,526,000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2-144호  기호(1~3) 일단지
2	"	23-22	공장용지	계획관리지역	1,308				
3	"	23-23	공장용지	계획관리지역	1,308				
4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511번길 112-11	23-14, 23-22, 23-23 위 지상 가동	공장(공장, 창고, 사무실, 숙소)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스라브지붕 2층  지하1층  지하1층  지하1층  1층  1층  1층  2층  2층	317.34  183.84  31.5  226.58  206.25  73.75  304.12  247.5	532.68    506.58    304.12  247.5	182,000    210,000    443,000  266,000	96,947,760    106,381,800    134,725,160  65,835,000	650,000 x 14/50    750,000 x 14/50    950,000 x 14/30  950,000 x 14/50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4-1	"	" 위 지상 나동	공장 (창고)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1층	65.07	65.07	271,000	17,633,970	500,000 x 19/35
4-2	"	" 위 지상 다동	공장 (물탱크 실)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1층	22.72	22.72	190,000	4,316,800	350,000 x 19/35
5	"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511번길 112-11	" 위 지상 라동	공장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125	125	360,000	45,000,000	450,000 x 28/35
<b>소 계</b>								<b>₩1,453,366,490</b>	
ㄱ	<제시외건물>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23-14, 23-22, 23-23 위 지상	창고 등	기존벽체이용 판넬조	(55)	55	식	8,250,000	
ㄴ	"	" 위 지상	창고 등	기존벽체이용 판넬조	(108)	108	식	16,200,000	
ㄷ	"	" 위 지상	창고 및 가추 등	기존벽체이용 판넬조 및 파이프조 판넬지붕	(79)	79	식	5,530,000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ㄹ	"	" 위 지상	창고 등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6)	6	식	900,000	
ㅁ	"	" 위 지상	창고 및 계사 등	판넬조 및 일부 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72)	72	식	5,040,000	
ㅂ	"	" 위 지상	견사	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12)	12	식	720,000	
ㅅ	"	" 위 지상	창고 등	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72)	72	식	5,040,000	
ㅇ	"	" 위 지상	창고 등	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48)	48	식	3,360,000	
ㅈ	"	" 위 지상	견사	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12)	12	식	720,000	
<b>소 계</b>								<b>₩45,760,000</b>	
ㅊ	<제시외관정>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23-14, 23-22, 23-23 위 지상	관정	-	(1식)	1식	-	6,000,000	
<b>소 계</b>								<b>₩6,000,000</b>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ㄱ	<제시외수목>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23-14, 23-22, 23-23 위 지상	수목	-	(1식)	1식	-	3,000,000	
<b>소 계</b>								<b>₩3,000,000</b>	
<b>합 계</b>								<b>₩1,508,126,490.-</b>	
				이	하	여	백		

# 기계기구(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명 칭 (종 류) 구조 . 규격 . 형식 . 용량	제 작 자 제 작 번 호 제작 (취득)일자 수입 신고 일자	수량	감 정 평 가 액		비 고
				단 가	금 액	
1	사출기 형체력:220ton 이론사출용량:706cm <sup>3</sup> 형판최대간격:550(m/m) 형판최소간격:230(m/m)	동신하이드로릭 제조번호:200354 2002.06.20	1식	-	감정평가 외	현황 소재불명
2	사출기 형체력:180ton 이론사출용량:550cm <sup>3</sup> 형판최대간격:550(m/m) 형판최소간격:200(m/m)	통일중공업(주) 2001.04.25	1식	-	감정평가 외	현황 소재불명
<b>소 계</b>						<b>₩</b>
≡	<제시외기계기구> 수변전설비 250kW	미상	1식	-	20,000,000	관찰감가
<b>합 계</b>						<b>₩20,000,000.-</b>
	이	하	여	백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소재 "태생3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및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3) 형태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25)(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건물개황도, 사진" 참조바람.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태	(3) 설비내역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기호(4) :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2층 건으로서,  
 벽 체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임.  
 내 벽 : 페인팅, 판넬, 타일 및 인테리어 마감 등임.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기호(4-1)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벽 체 : 무벽체 마감 등임.

기호(4-2)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벽 체 : 샌드위치 판넬 마감 등임.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기호(5) : 경량철골구조 기타(강판)지붕 단층 건으로서,  
 벽 체 : 샌드위치 판넬 마감 등임.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 (2) 이용상태

기호(4) : 공장(공장,창고,사무실,숙소)로 이용중임.  
 기호(4-1) : 공장(창고)로 이용중임.  
 기호(4-2) : 공장(물탱크실)로 이용중임.  
 기호(5) : 공장 등으로 이용중임.

##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기호(4)), 난방설비(기호(4),2층), 소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br>(4) 부합물 및 종물 | (2) 이용상태<br>(5) 공부와의 차이 | (3) 설비내역<br>(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 사진" 참조바람.

## (5)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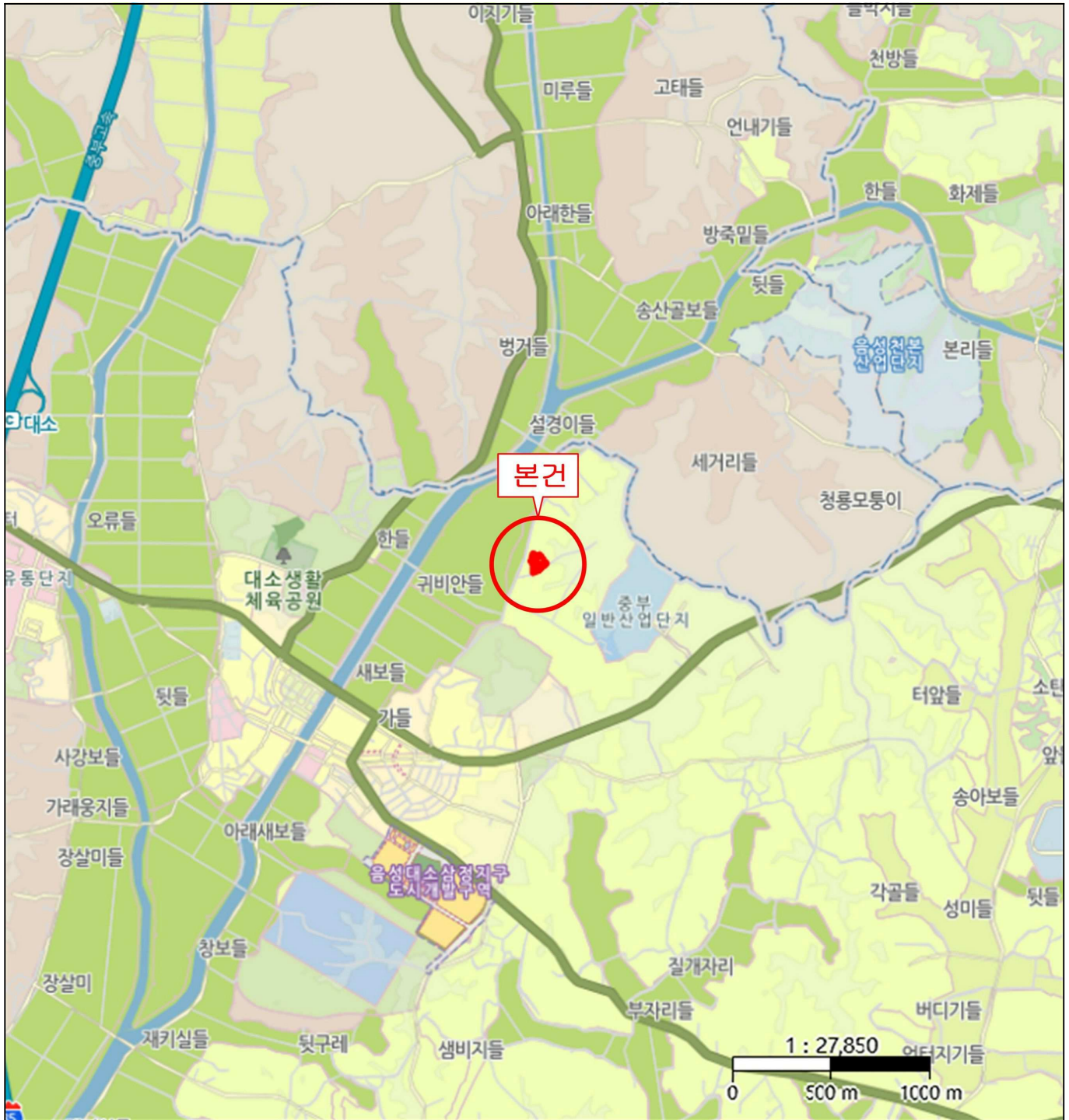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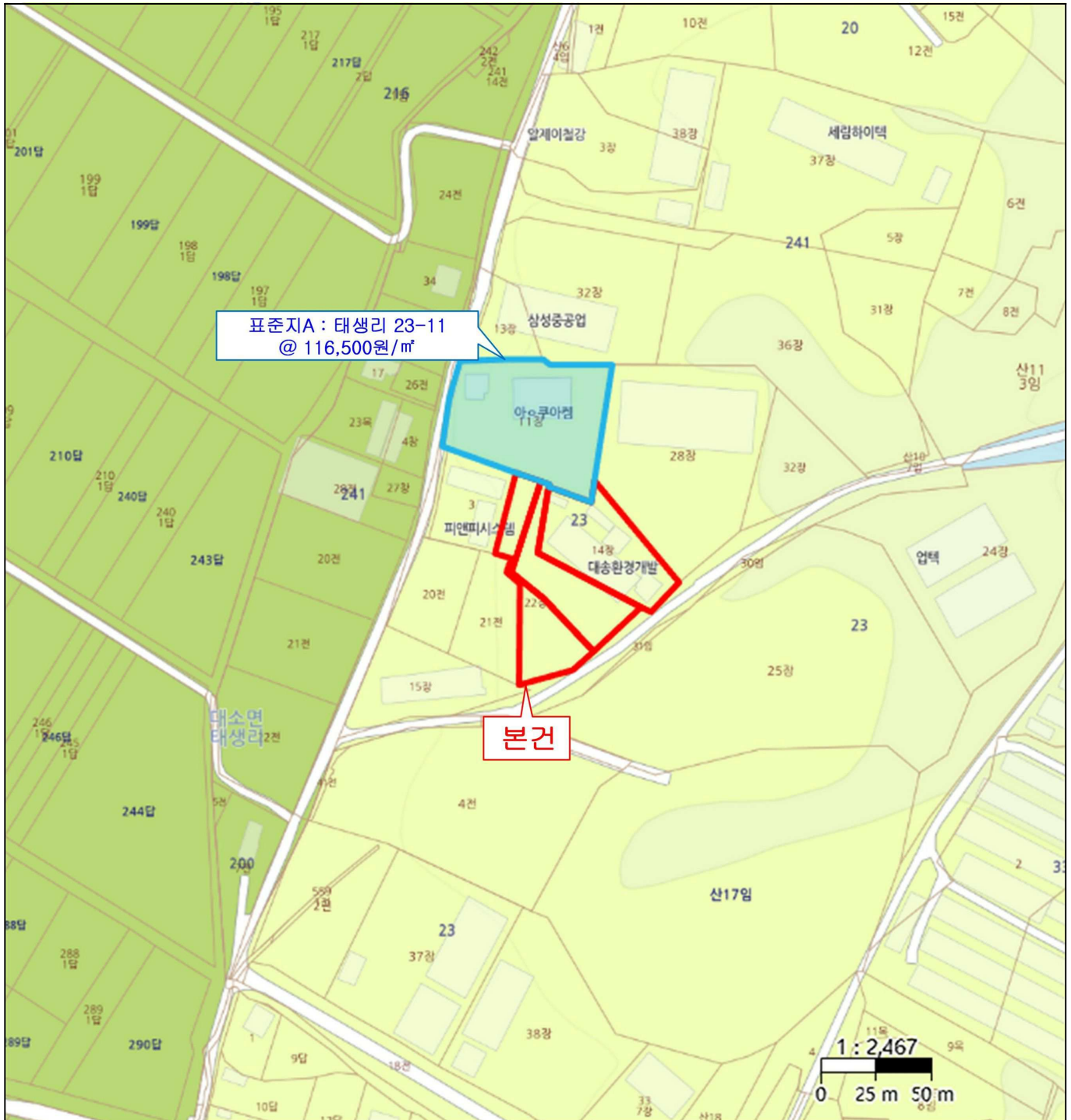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23-14 외



# 상세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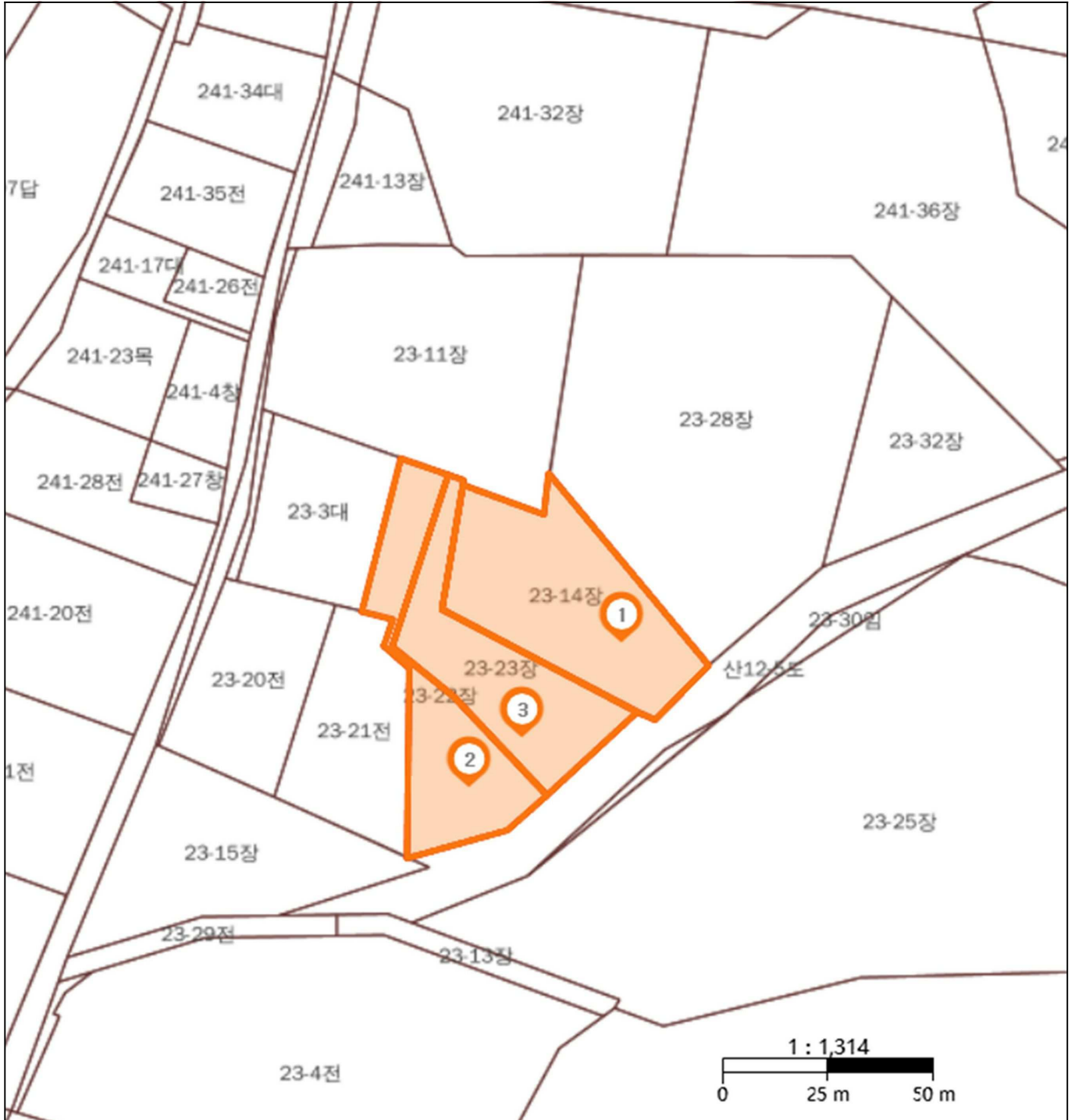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23-14 외



# 지 적 개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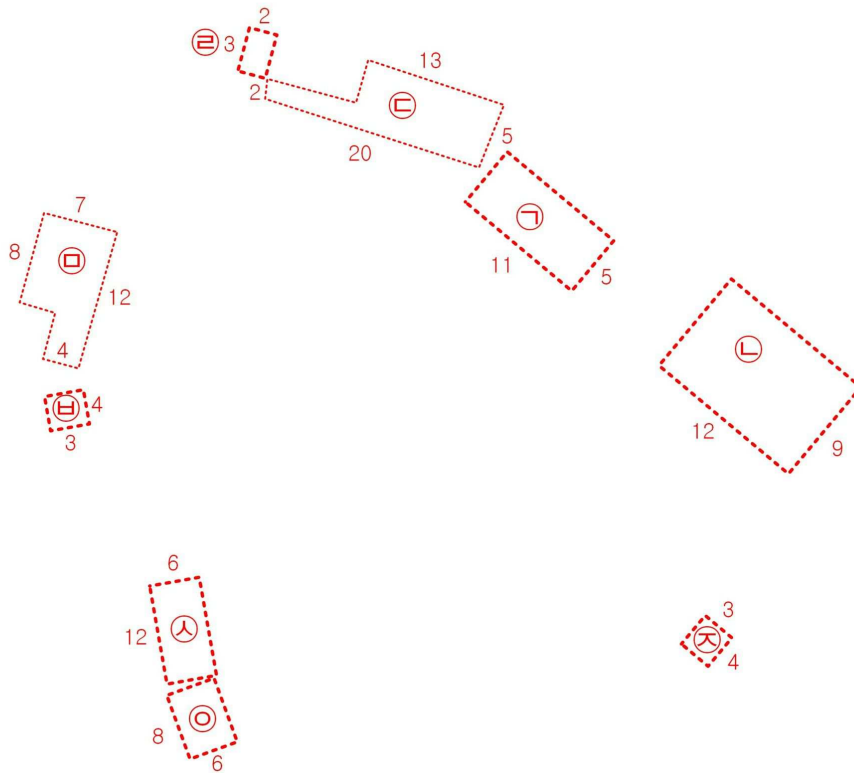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23-14 외





# 건물개황도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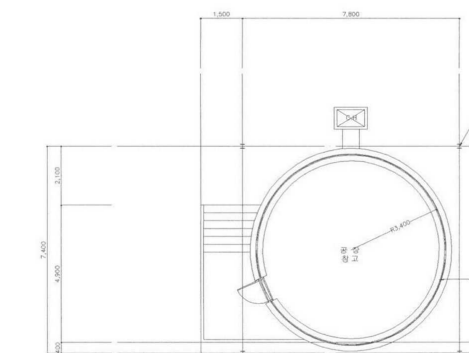
## 제시외건물

- ㉑ 기존벽체이용 판넬조(창고 등) 약 55㎡
- ㉒ 기존벽체이용 판넬조(창고 등) 약 88㎡
- ㉓ 기존벽체이용 판넬조 및 파이프조 판넬지붕(창고 및 가추 등) 약 79㎡
- ㉔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등) 약 6㎡
- ㉕ 판넬조 및 일부 파이프조 판넬지붕(창고 및 계사 등) 약 72㎡
- ㉖ 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견사) 약 12㎡
- ㉗ 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등) 약 72㎡
- ㉘ 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등) 약 48㎡
- ㉙ 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견사) 약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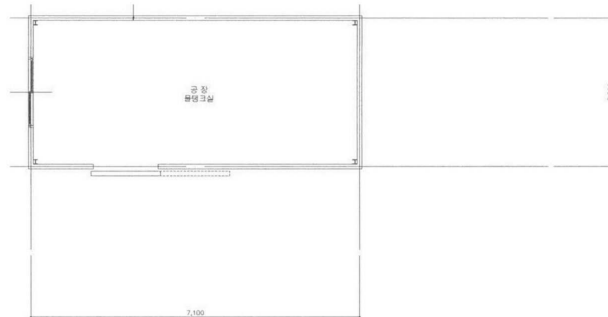
# 건물개황도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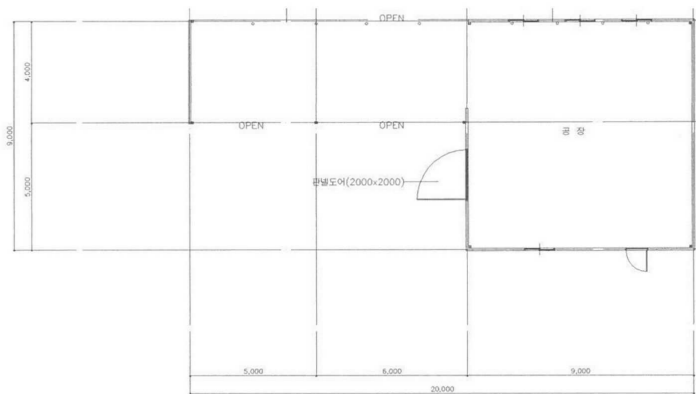


# 건물개황도

NO SCALE



기호(4-2). 1층 : 약 22.72㎡  
(실제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대체로 대등함)



기호(5). 1층 : 약 125㎡  
(실제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대체로 대등함)



(4)



(4)



(4-1)



(4-2)



(5)









( )



( )

